

의안번호	276
발의일자	2023. 5. 31.
회부일자	2023. 6. 2.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3. 6. 19. (월)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 수 산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진영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임기진 의원 외 15명

2. 제정이유

-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농작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농업작업안전재해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 예고기간 : 2023. 6. 5. ~ 6. 1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7호)
- 의견제출 : 없음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 경북 농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종사자 평균연령 증가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시 사고위험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농업근로자는 특성상 타산업 근로자에 비해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으며, 2021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율은 0.63%인 반면 농업 분야는 0.83%로 높은 수준임

<산업재해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근로자수 (명)	전 체	18,560,142	19,073,438	18,725,160	18,974,513	19,378,565
	농 업	76,033	83,540	79,482	78,940	78,999
재해자수 (명)	전 체	89,848	102,305	109,242	108,379	122,713
	농 업	555	648	642	639	668
재해율 (%)	전 체	0.48	0.54	0.58	0.57	0.63
	농 업	0.73	0.78	0.81	0.81	0.85

자료 : 고용노동부

- 농작업중 안전재해위험에 대한 보장과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5년에 제정·시행 중에 있고, 법률에서 ‘보험’과 더불어‘예방’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보험료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북 농업인을 보호하며,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과 이를 위한 안전예방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타 시·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2021.11.2.), 광주광역시(2022.2.23.), 전라남도(2023.4.27.) 등 3개 시도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나.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농업작업”과 “농업작업안전재해”, “농업인안전보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의함
- 안 제3조는 경북도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해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지원대상을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까지 폭넓게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세부적 기준은 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경상북도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북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지원 관련 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다만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련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여부와 성과관리 등을 위해 연간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도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경북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보험료 자부담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농가의 자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여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도별 지원 비율(2022년 기준)〉

(단위 : %)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부담
경 기 도	100	50	11.25	26.25	12.5
강 원 도	100	50	12	28	10
충청북도	100	50	5	10	35
충청남도	100	50	7.5	17.5	25
경상북도	100	50	6	14	30
경상남도	100	50	7	10	33
전라북도	100	50	9	21	20
전라남도	100	50	9	21	20

○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기관,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절차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환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법인·단체와 행정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있어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현장은 농업종사자 특성상 사고위험성이 타산업분야 종사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한 농기계 장비, 화학물질 등을 활용한 작업환경이 주를 이루어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한파, 가뭄, 강풍, 우박 등 기상이변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 위험 가능성이 높아짐
- 본 조례안의 제정·시행에 따라 농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추진현황(2022년)

□ 2022년 시군별 보험 가입 및 지급 실적

(단위: 호, 명, %, 천원)

시 군	'22년 가입 실적				'22년 지급 실적		비 고
	대상자수	가입인원	가입금액	가입률	지급건수	지급금액	
계	279,203	126,297	16,888,924	45.2	52,759	15,545,687	
포항시	22,075	7,273	888,435	32.9	2,954	776,908	
경주시	20,578	8,261	990,756	40.1	3,050	741,000	
김천시	20,903	11,047	1,242,749	52.8	5,631	987,451	
안동시	20,423	8,392	1,400,270	41.1	3,610	1,250,246	
구미시	17,204	2,827	344,524	16.4	1,254	330,980	
영주시	14,191	6,164	865,028	43.4	2,948	1,542,370	
영천시	15,190	5,440	782,392	35.8	2,285	345,996	
상주시	21,275	10,092	1,503,188	47.4	4,705	1,170,686	
문경시	11,730	4,439	556,098	37.8	1,527	292,254	
경산시	12,998	4,833	506,214	37.2	2,959	597,598	
군위군	6,409	5,734	579,258	89.5	2,566	416,048	
의성군	14,596	6,067	1,114,575	41.6	3,005	1,194,186	
청송군	8,570	5,233	935,493	61.1	1,752	625,430	
영양군	4,394	4,497	454,370	102.3	1,196	276,238	
영덕군	5,617	3,598	403,666	64.1	1,225	488,250	
청도군	11,511	6,059	904,254	52.6	3,815	1,855,507	
고령군	6,108	2,366	236,779	38.7	729	201,899	
성주군	9,067	7,911	799,588	87.3	2,368	309,542	
칠곡군	8,477	3,703	369,632	43.7	1,223	255,506	
예천군	11,899	4,920	980,038	41.3	1,909	1,597,527	
봉화군	9,085	4,447	681,582	48.9	1,565	232,642	
울진군	6,143	2,919	342,093	47.5	471	56,475	
울릉군	760	75	7,942	9.9	12	948	

* 대상자수 기준('20) :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통계청)

□ 2022년 유형별 보험 지급건수

(단위: 건)

시군	계	골절	사망	수술	실손	입원	장해	치료
계	52,759	500	644	781	44,212	5,396	1,140	86
포항시	2,954	8	28	40	2,597	250	27	4
경주시	3,050		32	27	2,659	289	36	7
김천시	5,631	21	56	86	4,891	451	103	23
안동시	3,610	1	49	65	2,974	437	83	1
구미시	1,254	1	13	15	1,111	90	21	3
영주시	2,948	83	85	40	2,286	355	99	
영천시	2,285		19	31	1,962	250	20	3
상주시	4,705	28	33	57	4,018	451	108	10
문경시	1,527	22	23	15	1,300	148	19	
경산시	2,959	30	22	29	2,577	246	51	4
군위군	2,566		8	44	2,204	246	63	1
의성군	3,005	101	30	51	2,371	382	70	
청송군	1,752	12	10	50	1,384	237	59	
영양군	1,196		16	25	1,002	135	15	3
영덕군	1,225		27	18	1,050	111	18	1
청도군	3,815	2	46	52	3,030	471	204	10
고령군	729	1	10	5	601	93	16	3
성주군	2,368		18	36	2,066	199	40	9
칠곡군	1,223		7	23	1,085	92	12	4
예천군	1,909	147	72	33	1,394	221	42	
봉화군	1,565	26	24	30	1,276	178	31	
울진군	471	17	16	9	368	61		
울릉군	12				6	3	3	

□ 2022년 유형별 보험 지급금액

(단위: 천원)

시군	계	골절	사망	수술	실손	입원	장해	치료
계	15,545,687	44,507	6,055,324	194,715	4,469,750	1,600,452	3,157,838	23,101
포항시	776,908	800	396,243	10,201	254,378	61,219	52,867	1,200
경주시	741,000		361,899	6,601	258,580	62,330	49,790	1,800
김천시	987,451	1,700	223,501	20,702	453,388	102,048	180,112	6,000
안동시	1,250,246		308,203	15,902	341,001	189,497	395,343	300
구미시	330,980	100	191,767	3,600	89,223	16,070	29,319	901
영주시	1,542,370	7,401	623,218	11,701	249,873	99,035	551,142	
영천시	345,996		1,065	7,800	189,524	84,067	62,640	900
상주시	1,170,686	2,700	273,045	14,401	367,491	133,244	376,805	3,000
문경시	292,254	1,900	77,463	3,600	110,607	29,664	69,020	
경산시	597,598	2,901	212,888	7,500	236,065	47,563	89,481	1,200
군위군	416,048		61,320	10,802	213,730	39,590	90,306	300
의성군	1,194,186	9,101	541,954	12,300	252,665	190,215	187,951	
청송군	625,430	1,100	130,789	12,900	179,899	94,362	206,380	
영양군	276,238		122,528	6,601	123,825	17,484	5,500	300
영덕군	488,250		283,800	4,800	122,360	27,916	49,074	300
청도군	1,855,507	200	832,161	11,101	341,818	159,514	508,013	2,700
고령군	201,899	100	61,253	1,500	61,348	12,233	64,865	600
성주군	309,542		61,538	9,000	182,040	21,544	33,020	2,400
칠곡군	255,506		122,168	5,100	103,781	11,680	11,577	1,200
예천군	1,597,527	12,904	1,166,717	9,602	180,024	119,678	108,602	
봉화군	232,642	2,000	1,125	6,601	114,536	72,349	36,031	
울진군	56,475	1,600	679	2,400	42,826	8,970		
울릉군	948				768	180		